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5-678호

도시관리계획(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933호(2009.09.28.)로 최초 고시되고, 국토부고시 제2013-848호(2013.12.27.)로 변경 고시된 「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」 내 자곡동 591번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10월 16일

강 남 구 청 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-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내 강남구 자곡동 591번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상 최고층수를 일부 완화 계획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건축계획 수립을 유도하고, 오피스 건립을 촉진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 및 지역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

I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(변경 없음)

구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강남구 세곡동, 자곡동 일원	938,992.6	-	938,992.6	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939호 (2009.9.28)	-

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(변경없음, 기재생략)

3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가. 가구 및 획지구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, 기재생략)

나. 건축물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■ 업무용지(변경)

구분	가구번호	계 획 내 용		비고
기정	업무1~업무5	높이	• 업무1~업무4 : 최고층수 10층 이하 • 업무5 : 최저층수 3층 이상, 최고층수 8층 이하	-
변경	업무1~업무5	높이	• 업무1~업무3 : 최고층수 10층 이하 • 업무4 : 최고층수 12층 이하(단, 오피스텔은 10층 이하) • 업무5 : 최저층수 3층이하, 최고층수 8층이하	높이 완화

※ 상기 사항 외 변경 없음, 기재 생략

- 변경사유서

구 분	변경내용	변 경 사 유	비고
업무4 (자곡동 591번지)	최고층수 변경 : 10층 → 12층 이하 (단, 오피스텔은 10층 이하)	경미한 변경 범위 내 층수 2개층 완화	-

다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(변경 없음, 기재생략)

라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(변경 없음, 기재생략)

Ⅲ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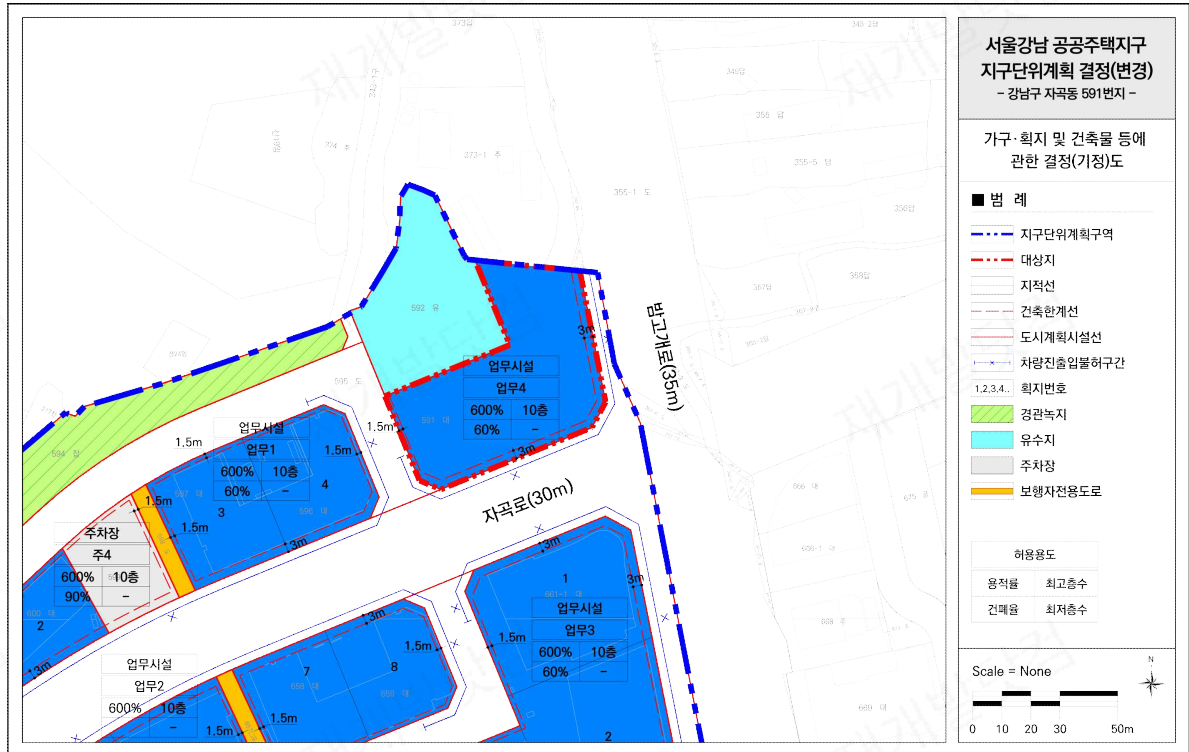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Ⅳ 관계도서는 강남구 도시계획과(☎02-3423-6109)에 비치·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 및 서울도시공간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관계도면]

■ 가구·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

■ 가구·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